

	교육 수요자 만족도 운영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7.2.9
		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,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조사대상 및 항목) 교육만족도의 조사대상은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, 학부모, 교원, 직원, 지역주민, 지역사회 관계자 등으로 하며, 조사항목은 교육과정 운영, 교수·학습역량, 교육환경, 취업지원, 편의/복지환경, 재정지원 등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며, 세부 조사 항목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한다.

제 3 조(조사시기) 교육만족도 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연 1회 외부기관을 통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.

제 4 조(조사방법) 교육만족도 조사는 e-mail 및 온라인 조사, 대면조사, 우편조사,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제 5 조(주관부서) 주관부서는 기획산학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
2.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·평가
3.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 수립·통보
4.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

제 6 조(관련부서) 관련부서는 대학 내 전 부서 및 학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참여
2. 세부개선방안 수립·추진
3. 개선방안 추진결과 분석 보고

제 7 조(기획조정위원회)

1. 교육만족도 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3. 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산학처장이 위촉한다.
4. 교육만족도 실행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해 심의한다.

제 8 조(개선방안 시행) 개선방안 시행 관련부서나 학과는 교육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개선 여부 점검) 기획산학처는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추후 대학의 교육만족도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.